

LegalTimes

www.legaltimes.co.kr



100번째 FLC 한진덕 변호사의 미 변호사 성공기

 **부수인증매체**
한국ABC협회
www.kabc.or.kr

02

9 771976 488000
ISSN 1976-488X 정가 11,000원

(주)리걸타임즈

‘올해 주목할 로펌’ 법무법인 세한
두바이에서 꿈 키우는 한국계 변호사들
2015년 검사평가 · 법관평가 내용

이란 제재 해제…기업들 진출 확대 모색

전략물자는 허가받아야 가능
미 달러화 사용도 계속 금지

1 월 17일자로 이란에 대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에 투자,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. 건설, 플랜트를 비롯해 석유화학이나 조선, 철강 등 의 업종은 물론 종전 제재 하에서도 교역을 지속해 온 가전, 플라스틱, 종이, 화학 등의 업종도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직접투자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그러나 ①자본거래적 성격, ②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, ③B2B 거래 중 토목·건축사업 등은 여전히 거래가 제한되며, 전략물자는 제재해제에도 불구하고, 대외 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해 주의가 요망된다.

제재대상 일부 유지

정부는 우선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 현행 원화 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.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(USD) 사용이 계속 금지되기 때문.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앞으로도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된다 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.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대 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가 사용될 수 없으며,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.

미국과 EU의 이란 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



류혜정 변호사

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기관과 기업·개인들은 이란과의 거래 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. 이용금지 항만도 일부 유지되어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이란의 항만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,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정부는 “제재대상자와의 거래, 부적격 항만 이용,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 지급(수령)이 거부될 뿐 아니라,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혹은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”고 주의를 환기했다. 이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국내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외환거래 중지 등이 있고, 미국, EU와 관련해 선 미국 또는 EU시장 진출 금지, 달러화 사용금지, 영업 점 폐쇄 등이 예상된다.

제재복귀도 가능

법무법인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는 “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(snap back)가 가능하므로, 기업들이 이란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‘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’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”고 조언했다. ■

이은재 기자